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림보호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에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림재난통제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 12.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2]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의2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산림보호국 산림재난통제관	0명	2027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장의2 <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제10장의2 <u>평가대상 조직</u>